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10.20.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J437]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B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기구의 가격하락위험, 자산배분위험, 재간접투자위험, 해외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해당사항 없음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지정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9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운용에 관한 사항>

■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채권,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대체투자(인프라, 부동산 등)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를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① 채권관련 인컴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국채, 투자적격등급(IG) 채권 및 투기등급(하이일드)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
- 신용시장 변화에 따른 하이일드 채권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수익률 개선 및 신용위험 관리

② 대체자산관련 인컴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국채, 투자적격등급(IG) 채권 및 투기등급(하이일드)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
- 국내·외 부동산(REITs),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

- 부동산,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과 장기 자본차익을 추구
-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관련 투자는 입지, 현금흐름, 순영업이익(NOI),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 정부보조지원책 등의 분석을 기반
 (국내오피스, 고속도로, 일본리츠, 일본태양광, 미국인프라 등으로 분산하며 신규 투자처 지속 발굴)
- 해외 리츠관련 선물을 활용하여 해외 리츠의 가격하락 위험을 적극적으로 방어(Hedge)하면서, 인컴수익의 선별적 확보 추구

③ 배당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배당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주,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투자
- 지속적인 배당수익뿐만 아니라 주가상승을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선별

※ 금융시장상황 및 운용전문인력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배당수익 추구전략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자산유형	종목명	유형	등록지	운용사	주요내용	투자비중(안)
채권인컴	Vanguard Short-Term TIPS ETF	ETF	미국	The Vanguard Group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12-10-16 -설정액: 약 136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3.0% 수준
	SPDR Bloomberg Bardays Short-Term HY ETF	ETF	미국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하이일드채 -설정일: 2012-03-15 -설정액: 약 45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7.0% 수준
	iShares 0-5 Year TIPS ETF	ETF	미국	BlackRock Fund Advisors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12-03-10 -설정액: 약 52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7.0% 수준
	PIMCO 1-5 Year U.S. TIPS ETF	ETF	미국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 LL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09-08-21 -설정액: 약 9.0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0.0% 수준
대체인컴	맥쿼리인프라	인프라	대한민국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요 투자대상자산:국내 사회기반시설사업 -설정일: 2006-03-15 -설정액: 약 4 조 4,594 억원 -표시통화: KRW -감독기관: 한국 금융감독원	8.00% 수준
	Prologis	리츠	미국	Prologi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글로벌 산업용 부동산 -설정일: 1997-11-20 -설정액: 약 853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 수준
	Omega Healthcare	리츠	미국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의료 시설 -설정일: 1992-03-31 -설정액: 약 84 억 USD	2.0% 수준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American Homes 4 Rent	리츠	미국	AMERICAN HOMES 4 RENT, LP.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주거용 부동산 -설정일: 2013-08-01 -설정액: 약 119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 수준
	American Tower	리츠	미국	American Tower Corp	-주요투자대상자산미국인프라스트럭처관련부동산 -설정일: 2010-06-28 -설정액: 약 1,117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60% 수준
	Equinix	리츠	미국	Equinix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글로벌 데이터센터관련 부동산 -설정일: 2000-08-11 -설정액: 약 643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Simon Property	리츠	미국	Simon Property Group,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소매 부동산 -설정일: 1993-12-13 -설정액: 약 379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Alexandria	리츠	미국	Alexandria Real Estate Equitie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사무실용 부동산 -설정일: 1997-05-27 -설정액: 약 264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배당 인컴	배당주 등	주식	미국	-	-	5.0% 수준
유동성	-	-	-	-	-	10.0% 수준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5월 19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자산의 일부를 제시한 예시이며, 향후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 유니버스는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과 협업하여 선정

- 효율적인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선정을 위해 온라인특화 투자자문사인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유니버스 선정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업자인 IBK 자산운용이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여 운용합니다.

① 업무위탁의 범위와 사유

구분	내용
업무위탁의 범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② 투자자문업자의 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설립일	2016. 5. 16 법인 설립 / 2017. 9. 8 투자자문업 등록

주소 및 연락처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65, 4층

※ 상기 운용전략은 금융시장 상황 및 운용전문인력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환헷지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에서 직접적인 헷지를 수행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헷지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USD 등)에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헷지 비율: 외화표시 자산 NAV의 80% 이상 수준)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헷지 대상 자산 및 환헷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환헷지 전략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완전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해외60재간접형)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이내	0.770	0.400	0.900	1.0934	214	332	454	714	1,4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070	0.700	1.190	1.3845	145	296	452	780	1,70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70	0.200	0.580	0.8824	142	238	338	550	1,1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720	0.350	0.730	1.0331	108	221	338	587	1,297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율은 **연 0.19%** 수준으로 추정)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5.10.21 ~ 26.10.20	최근 2년 24.10.21 ~ 26.10.20	최근 3년 23.10.21 ~ 26.10.20	최근 5년 21.10.21 ~ 26.10.20	설정일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2021.07.01	6.00	4.29	8.34	1.91	1.80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10.33	8.50	8.04	7.43	7.24

(주1)비교지수: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실적은 작성기준일 현재 기재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신준형	1975	책임(이사)	35개	10,045억원	8.05	9.35	6.44	9.30	19년

김정훈	1985	부책임(차장)	5개	323억원	7.14	-	6.44	9.30	16년 3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인 해외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외화표시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전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투자위험(원금손실위험)의 회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증권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위험이 확대되거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환매수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주식, 다양한 대체투자자산 및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국가의 시장·정치·경제적 상황·정부정책·과세제도 등의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 계약해지 및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접운용 또는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없는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의 특성 상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이 감소되거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지수를 책정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외국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지연	국제 결제와 관련된 송금 지연 및 해외증권시장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에서 직접적인 헷지를 수행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헷지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나, 이러한 전략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헷지에 대한 사항은 투자신탁 환위험관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처리(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처리에 대한 위험(오퍼레이션 위험)이 존재합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table>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2">없음</td><td colspan="2">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4">
<table>
<tr><td>산정방법</td><td>-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44자 (www.ibk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r><td>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td><td>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과세</td><td colspan="4">
<table>
<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수익자는 별도의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됩니다.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참조)](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참조)]</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IBK자산운용㈜ (대표번호: 02-727-88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bkasset.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 colspan="2">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1월 10일</td><td>존속 기간</td><td colspan="2">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S)</td><td>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기타</td><td>개인연금</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td></tr>
</table>
</td></tr>
</table>

		(P)	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전문투자자(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호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외국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00억이상 투자하는 경우,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서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